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52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이수진 · 민병덕 · 서미화

김준혁 • 정혜경 • 송옥주

이재강・김문수・김현정

박홍근 • 전종덕 • 박해철

의원(12인)

제안이유

플라스틱이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생산량·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의류 등에 함유된 플라스틱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여 환경은 물론 사람의 호흡기·소화기계 접촉을 통해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한 상황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나, 그 생산과 사용·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수단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였음. 이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영향조사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평가됨.

이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사용・배출의 규제, 저

감·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함.

주요내용

- 가. 미세플라스틱을 물에 녹지 않는 5밀리미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입자로 정의하고 그 발생 방식에 따라 1차·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함(안 제2조제1호).
- 나.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저감·관리하기 위한 국가·지방자 치단체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 지).
- 다.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배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을 수 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주민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미세플라스틱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 8조).
- 마.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9조).

- 바. 1차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함유된 제품으로서 사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수입을 금지함(안 제10조제1항).
- 사.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함(안 제10조제2항).
- 아.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에 대하여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이 하천·호소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 자. 폐기물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유출이 우려될 경우, 해당 폐기물이 하천·호소 등에 배출된 폐기물일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양폐기물일 때에는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수거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 차. 폐기물로 인하여 미세플라스틱 유출이 우려될 경우,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처리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해양폐기물의 발생 원인이된 행위를 한 자에게 처리·수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제5항).
- 카. 미세플라스틱 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 대하여 미세 플라스틱 실태조사·연구개발을 실시하도록 하고, 미세플라스틱으

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방안을 조사·연구하는 미세플라스틱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

타.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에 필요한 기술을 물환경 관리시설에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저감·관리하여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위해를 예방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크기가 5밀리미터(mm) 이하인 물에 녹지 않는 고체플라스틱 입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한다.
 - 가. "1차 미세플라스틱"이란 특정한 기능·용도에 활용할 목적으로 인위적·의도적으로 제조된 미세플라스틱을 말한다.
 - 나. "2차 미세플라스틱"이란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해류·자외선·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미세플라스틱을 말한다.
 - 2.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플

라스틱이 환경과 국민의 건강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저감·관리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플라스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 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세플라스틱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미세플라스틱의 관리를 위하여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제품의 생산 등 그 사업활동에 따른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저감·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배출을 저 감·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 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의 저감·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그 배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미세플라스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미세플라스틱의 발생·배출현황 및 전망
 - 3. 미세플라스틱이 환경 및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연구
 - 4. 미세플라스틱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 5. 미세플라스틱의 저감·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 6.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 7.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대책 실시를 위한 민관협력 등 추진체 계에 관한 사항
 - 8.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
 - 9. 그 밖에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미세플라스틱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관할구역 내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 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할구역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하고,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이를 제9조

- 에 따른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 ① 미세플라스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 2. 종합계획·시행계획 등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3. 미세플라스틱 저감 관리 정책과 관련 법령 제도 개선방향
 -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
 - 5.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 6. 그 밖에 대책위원회가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③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과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한다.
 - 1.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 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④ 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장관이 된다.
- ⑤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제조·수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1차 미세플라스틱을 포함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 니 된다.
 - 1. 포함되거나 함유된 1차 미세플라스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 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어긋나는 제품
 - 2.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접촉·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 품
 -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 라.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 ② 누구든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 이상으로 발생·배출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의 사용목적에 따라 함께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요소·요인 또는 통상적인 사용 목적 범위에서 함께 사용되는 요소·요인 등으로 인하여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배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플라스틱을 원료 재료로 사용한 제품
-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
- ③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배출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려는 자는 그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발생·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이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미세플라스틱의 유출 금지)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폐기 대상 제품에 포함·함유되어 있는 1차 미세플라스틱

또는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된 2차 미세플라스틱이 하천·호소나 해양 등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하천·호소 등을 관리하는 시·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이 관할 하천·호소 등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미세플라스틱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호소 등에 배출된 폐기물로 인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유출이 우려될 경우 그 폐기물(이하 "미세플라스틱 유출 폐기물"이라 한다)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유출 폐기물에 대하여 해당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또는 처리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이하 "해역관리청"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바

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로 인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유출이 우려될 경우 그 폐기물(이하 "미세플라스틱 해양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 하여야 한다.

- ④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 또는 해중에 떠 있거나 해저에 침적된 미세플라스틱 해양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 ⑤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4항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해양폐기물에 대하여 해당 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미세플라스틱 해양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유출 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5항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해양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 ⑦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미세플라스틱 유출 폐기물 및 미세플라스틱 해양폐기물의 수거 기준과 수거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13조(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등) ① 제품의 폐기에 따라 발생·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판매자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제1항의 재활용 및 그 밖의 자원순환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미세플라스틱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플라스틱 배출 실태와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15조(미세플라스틱 관련 국제협력) 정부는 미세플라스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국제적 차원의 미세플라스틱의 조사 · 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 2.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미세플라스틱 관련 분야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 3. 국가 간 미세플라스틱의 감시체계 구축
- 4. 국가 간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 5. 국제사회에서 미세플라스틱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 홍보 활동
- 6. 국제회의 · 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참가
-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6조(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지원 등) ① 정부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과 배출경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추진할 때 단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기획·관리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의 조사 · 기획 · 평가 및 관리
 -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의 공동 기획 및 협동 연구개발 관리
 - 3. 미세플라스틱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
 - 4. 그 밖에 미세플라스틱 발생·배출의 저감과 위해 예방을 위한 체 계적인 연구개발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에 관하여 그 미 세플라스틱 연구개발 전문기관을 지휘·감독한다.
- ④ 정부는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전문기관이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각각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다.
- ⑤ 전문기관의 지정과 관리·감독, 전문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도입 지원) 정부는 미세플라스틱 저 감 및 제거에 필요한 기술을 하수처리 또는 정수 시설 등 물환경 관리시설에 도입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미세플라스틱연구·관리센터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공학·환경보건학·분자생물학·병리학·식품학 등 미세플라스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를 미세플라스틱연구·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외에 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자료제출·검사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제2항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유출 폐기물 수거 등의 조치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해양폐기물 수거 등의 조치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 이상의 1차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함유하고 있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한 자
 -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2차 미세플라스틱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발생・배출될 우려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 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